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55
----------	-------

발의연월일 : 2025. 8. 20.

발 의 자 : 윤준병 · 박용갑 · 송옥주
이병진 · 박홍배 · 허성무
강준현 · 안호영 · 복기왕
서영교 · 위성곤 · 허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벤처투자가 가능한 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고용보험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등 44개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정기금의 벤처투자를 토대로 한 민간투자 등을 이끌어내는 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법정기금 역시 법률 폐지 또는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비율 역시 기금운용자금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벤처 투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정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체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기존 10%에서 15%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중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를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금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u>국가재정법</u>」에 따른 기금으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u>기금관리주체</u>”라 한다)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u>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② ~ ④ (생 략)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u>국가재정법</u>」 제5조제1항에 따라 <u>설치된</u>----- ----- --<u>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u> <u>해당하는</u>----- ----- -----. <u>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u> <u>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u> <u>조성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주체</u> <u>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u> <u>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u> <u>기금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u> <u>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